

인천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단27465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조합(구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양현주, 안주연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건우

변론 종결2024. 3. 8.

판결 선고2024.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86,096원 및 그중 96,565,041원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2022. 8. 29.까지는 연 7.5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3. 30. 중임하여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7. D에 대출기간을 2018. 1. 8.부터 2020. 1. 8.까지 2년, 대출이자율을 4.7%로 정하여 6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D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시행되던 A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2. 지연배상금률은 위에서 정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 이내로 합니다.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1%나.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12%다.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4%
최고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

제2조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 개정전 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A조합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A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각호 생략)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A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A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A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A조합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A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각호 생략)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A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A조합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A조합에 대해 당해 채무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A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A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A조합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A조합은 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A조합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이하 "연대보증인 등" 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A조합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조합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A조합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A조합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 D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 8. 인천 서구 E건물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이라 하고, E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 '○○○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I(2020. 1. 22. 'J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J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호 부동산은 2018. 5.경에, F호 부동산은 2018. 8.경에 각 매각되었고, 위 각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371,000,000원이 변제되었으며, F호, G호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마. 이 사건 개정 전 약관은 2018. 6. 12.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약관'이라 하고, 개정 전·후의 약관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되었고, 제8조 제4항에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A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바. 원고와 D는 2020. 1.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한을 2020. 1. 8.에서 2021. 1. 8.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경 다시 대출기한을 2022. 1. 8.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서인천세무서는 2020. 5. 27. D에, D가 2018. 9.경부터 2020. 3.경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각종 국세 합계 643,906,69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D가 J에 신탁한 14개 부동산들(H호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이익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기타 청구권 등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2020. 9. 8. 위 14개 부동산들에 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21. 5. 21. D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으므로, 2021. 5. 31.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에 대한 통지서는 2021. 5.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8. 11. 1회 공매예정가격을 555,034,000원으로 정하여 H호 부동산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 H호 부동산은 여러 차례 유찰이 된 후에 2021. 11. 1. 352,057,000원에 매각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12. 22. 위 매각대금에 예치이자를 더한 352,086,470원 중 114,041,660원을 서인천세무서에, 226,796,230원을 J에 각 배분하였고, 2022. 8. 22. J에 대한 배분금 중 222,434,959원이 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 15 내지 17, 2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2022. 8. 23.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96,565,04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33,921,055원 합계 130,486,096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30,486,096원 및 그중 원금 96,565,041원에 대하여 2022.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주채무자인 D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14일간 지체한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D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D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D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D가 상환한 돈이 어떠한 비율에 따라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잔존 채무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130,486,096원 및 그중 원금 96,565,041원에 대한 2022.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가 감경·면제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개정 약관 제8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고, 기한 이익이 부활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부활 통지를 해야 하는데 원고는 D의 기한 이익 상실 및 부활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개정 약관 제8조 제4항 등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의 확보 등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436조의2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약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한은 2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D가

대출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아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또한 서인천세무서는 2020. 5. 27. 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D가 J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2020. 9. 8. H호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기도 마쳤으므로, 원고는 2020. 5. 27. 또는 2020. 9. 8. 무렵에는 D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아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 또는 D와 협력하여 H호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이 사건 공매 절차 진행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위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감경·면제되어야 한다.

3) H호 부동산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 중 K호 부동산과 L호 부동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매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세 체납액 배분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별도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또한 H호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를 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H호 부동산이 염가 매각되면서 담보가 감소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485조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초 H호 부동산에 관하여 징수되어야 하는 체납 국세액은 82,793,254원인데, 실제로는 114,041,660원이 징수되었고, 이는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은 31,248,406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2022. 8. 23.을 기준으로 원금 96,565,04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33,921,055원 합계 130,486,09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130,486,096원 및 그중 96,565,041원에 대하여 2022.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에 별다른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D의 이자 등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유선, 문자메시지, 구두 등 어느 방법으로든 해당 사실을 전달하면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내부적으로 대출 업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두고, 채무자가 이자 등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담당자가 기한이익 상실 전부터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거래의 대출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자 등의 지급이 연체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간과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3) D는 2021. 3.경까지는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짧으면 하루, 길면 84일 내에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산정한 이자 등 상당액을 그대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방지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거래를 지속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가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이행 지체사실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정확하게 통지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만 그 도달이 입증되고, 적어도 원고가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기재한 경우에만 그 도달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에 있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지의 도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 피고의 주장처럼 통지의 도달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이 사건 약관 등에서 정한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충당 원칙 등을 미리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두고, 위 프로그램에 D와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D에 이자 등의 금액을 고지하거나 D가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D는 원고가 고지한 이자 등 금액이나 충당 결과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자 등 발생 내역, 대출금 원장 등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개정 약관 제8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개정 전 약관 제8조에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개정 약관 제8조 제4항에 비로소 통지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개정 전 약관은 제7조 제1, 3, 4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7조 제2항의 경우에만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결국 이 사건 개정 전 약관에는 제7조 제2항에 관련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이 누락된 오류가 있었고, 이 사건 개정 약관에 제8조 제4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개정 전 약관의 누락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개정 약관 시행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대출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적어도 대출기한 연장 이후에는 이 사건 개정 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관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D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2021. 5. 21. 피고에게 법적절차 착수예정 사실을 통지한 것 이외에는 D가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감경·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상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제8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경우에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감경·면제된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관 제8조가 민법 제436조의2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어서 원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감경·면제된다고 볼 경우, 원고는 민법 제436조의2 제2항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약관 제8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제8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은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은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증제도가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제도여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어 채권자의 정보제공 없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에 관한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이 알고 있거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 것으로 기대되는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정보제공 내지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므로 D의 신용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한 연장, D의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436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D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H호 부동산에 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H호 부동산에 관하여 했어야 하는 조치'가 어떠한 조치를 가리키는 것인지 파악할 수도 없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찰이 반복되면서 H호 부동산이 예상보다 저가에 매각되었다든가 H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예상보다 많은 체납세금이 선순위로 배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에게 130,486,096원 및 그중 96,565,041원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인 2022. 8. 29.까지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7.5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지원